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11. 26 선고 2021가합112193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1. 11. 26.

주 문

1. 피고와 소외 B 사이에 파주시 C 답 7,471㎡에 관하여 2018. 12. 21. 체결된 증여계약을 208,252,73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08,252,73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재판장 판사 김상규, 판사 이효신, 판사 김세이

[별지]

청 구 원 인

1. 당사자들의 관계

소외 B은 국세채납자로서 원고에 대한 채무자이고, 피고 A은 B의 자(子)입니다(갑 제 1호증 가족관계증명서).

2. 이 사건의 경위

가. 원고의 B에 대한 조세채권의 내역

B은 2017. 7. 25. 소외 D과 자신이 소유하던 서울특별시 강남구 E건물 F호(이하 '이 사건 양도부동산'이라 합니다)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해 8. 16. D에게 이 사건 양도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으나, 그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동대구세무서장은 2020. 12. 10. B에게 2020. 12. 31.을 납기로 정하여 양도소득세 193,723,510원을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으나, B은 2020. 12. 16. 위 고지서를 송달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바, 현재 B의 국세채납액은 아래 【표1】 기재와 같이 가산금과 증가산금을 포함하여 합계 208,252,730원에 이릅니다(원고의 B에 대한 위 208,252,730원의 양도소득세채권을 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합니다, 갑 제2호

증 이 사건 양도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갑 제3호증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 갑 제4호증 체납유무조회, 갑 제5호증 징수결정 송달내역 상세조회).

【표1】 B에 대한 이 사건 조세채권 내역(2021. 7. 기준)

(단위: 원)

귀속 년도	양도일자	납세의무 추상적성립일	납세의무 구체적성립일 (고지일)	고지세액	체납액 (가산금포함)
2017	2017.8.16.	2017.8.31.	2020.12.18.	193,723,510	208,252,730
합 계				193,723,510	208,252,730

나. B의 부동산 증여행위

B은 2018. 12. 21. 피고와 자신이 소유하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합니다)에 관하여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합니다)을 체결하고, 같은 해 12. 27.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습니다¹⁾(갑 제6호증 이 사건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3. 피보전채권의 성립

가.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2017. 12. 19. 법률 제152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 이 사건 부동산은 이 사건 증여 후인 2021. 1. 14. 4필지로 분할되었습니다.

제21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립한다.

1. 소득세·법인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② 다음 각 호의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각 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2. 납세조항이 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예정신고납부하는 소득세: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의 말일

제22조 【납세의무의 확정】

① 국세는 해당 세법의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된다.

국세기본법 시행령(2018. 2. 13. 대통령령 제286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의2 【납세의무의 확정】

법 제22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해당 세법의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되는 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증권거래세, 교육세 또는 교통·에너지·환경세: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제1호의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경우: 그 결정하는 때

소득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제105조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① 제94조제1항 각 호(같은 조 같은 항 제5호는 제외한다)에서 규정하는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제92조제2항에 따라 계산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제94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다만,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양도할 때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허가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는 그 해제일을 말한다)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신고를 예정신고라 한다.

제110조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①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제105조제1항제1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액이 있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신고를 확정신고라 한다.

④ 예정신고를 한 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소득에 대한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에 누진세율 적용대상 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하는 경우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에 따라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제110조에 따라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⑧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거주자의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였을 때에는 이를 그 거주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나. 관련법리

1)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37821 판결 등 참조).

2) 이러한 법리는 조세채권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사해행위 당시 아직 구체적인 경정결정 등에 의한 부과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도 조세채권의 발생에 관한 기초적 법률관계가 발생하였고,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성립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상태에서 실제로 경정결정 등의 일련의 절차를 거쳐 조세채권이 구체적으로 성립하였다면, 그와 같은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는 것이며, 피보전채권의 채권액에는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 종결시까지 발생한 가산금도 모두 포함됩니다(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66753 판결 등 참조).

다. 이 사건의 경우

B과 피고 사이 이 사건 증여계약은 2018. 12. 21. 체결된바, 당시 이 사건 조세채권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B이 2017. 7. 25. 소외 D과 자신이 소유하던 이 사건 양도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8. 16. D에게 이 사건 양도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쳐주었으므로, 2018. 12. 21. 당시 이미 이 사건 조세채권 발생에 관한 기초적 법률관계가 발생하였고,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성립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상태에서 2020. 12. 18. B에게 양도소득세가 고지되어 조세채권이 구체적으로 성립하였기 때문에 가산금을 포함한 이 사건 조세채권 전액이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습니다.

4.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가. 관련법리

1) 채무자가 책임 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함으로써 일반 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의 부족상태를 유발 또는 심화시킨 경우에 그 행위가 채권자취소의 대상인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목적물이 채무자의 전체 책임재산 가운데에서 차지하는 비중, 무자력의 정도, 법률행위의 경제적 목적이 갖는 정당성 및 그 실현수단인 당해 행위의 상당성, 행위의 의무성 또는 상황의 불가피성, 공동담보의 부족 위험에 대한 채무자와 수익자의 인식의 정도 등 그 행위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행위를 궁극적으로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최종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1다107818 판결 참조).

2)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타인에게 무상으로 증여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고(대법원 2005. 10. 14. 선고 2003다60891 판결,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다74843 판결 참조), 이러한 증여행위가 객관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는 것이므로 수익자가 그 증여행위 당시 선의였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채권자는 그

증여행위를 취소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03. 6. 13. 선고2003다12526 판결,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다5710 판결 등 참조).

나. 사해행위의 성립

1) 위 2. 나. 항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B은 2018. 12. 21. 피고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2018. 12. 27.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모두 마쳐주었습니다.

2)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일(2018. 12. 21.) 당시 B의 재산 상태를 보면, 아래 【표2】와 같이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은 이 사건 부동산이 유일하였고, 사해행위로 인하여 피고에게 귀속된 이 사건 부동산은 B의 적극재산 산정에서 제외하는 것이 당연한바(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3다36478 판결 등 참조), B은 당시 무자력 상태에 있었습니다(갑 제7호증 채납자 재산현황표).

표2】 이 사건 증여계약일(20 8. 2.2 .) 당시 B의 재산 내역

순번	항목	금액(원)	비고
적극재산			
1	이 사건 부동산	474,557,9 0)	갑 제6호증 이 사건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예금채권(G조합) (계좌번호 1 생략)	5 ,008	갑 제8호증 B금융거래내역
	예금채권(G조합) (계좌번호 생략)	4,378,0 4	
	예금채권(H은행) (계좌번호 3 생략)	0	

	예금채권(H은행) (계좌번호 4 생략)	11,8 6	
	예금채권(I은행) (계좌번호 5 생략)	10,000	
	예금채권(I은행) (계좌번호 6 생략)	696	
합계		479,010,474	

소극재산			
1	이 사건 조세채무	-193,7 3,510	갑 제4호증 체납유무조회
	근저당권부채무	- 05,000,000	갑 제6호증 이 사건 부동산 등 기사항전부증명서 갑 제9호증 근저당설정계약서,
합계		-410,346,890	

다. 소결

위와 같이 채무초과에 있던 B이 피고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하여 채무초과 상태가 더욱 심화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원고를 해하고자 하는 사해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진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B에게 사해의사가 있었음은 물론 B의 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할 것입니다.

5. 사해행위를 안 날

2) 이 사건 부동산은 2021. 1. 14. 4필지로 분할되었는데, 피고는 2021. 1. 20. 이 사건 부동산 중 J 답 1653㎡를 소의 K에게 대금 105,000,000원에 매도한바, 위 부동산의 1㎡당 가액을 환산하면 63,520원으로(원 단위 미만 버림),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은 474,557,920원(= 63,520원×7471㎡)에 이릅니다.

원고 산하 대구지방법국세청 소속 체납 담당 공무원은 2021. 2.경 B의 증여행위를 포착하여 사해행위 여부를 검토한바, 사해행위취소의 제소기간이 도과하지 않았음은 역수상 명백합니다(갑 제10호증 추적조사대상 선정검토표).

6. 가액배상 청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증여계약 이전에 설정되어 있던 주식회사 L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2021. 1. 21. 말소되어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가액배상을 청구합니다. 앞서 본바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의 실거래가격은 474,557,920원이고,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거나 설정되어 있었던 M조합 및 주식회사 L 명의 근저당권의 2018. 12. 21. 당시 실제 피담보채권액은 205,000,000원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조세채권 전부에 상응하는 208,252,730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습니다.

7.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원고는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하고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오니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